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 1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신설 및 종량제 봉투 환불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삭제(가정사업계폐기물) 및 신설(전자신고) (안 제2조)
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안 제10조)
다. 종량제 봉투 종류, 규격 변경(안 제14조~제18조, 제21조, 제23조)
라. 종량제 봉투 환불사항 개정(안 제22조, 제26조)
마.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변경(안 별표 1)
바.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 변경(안 별표 3)
사. 종량제 봉투(가정사업계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삭제(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심사 참조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26. 3. 6. ~ 3.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원안가결(2026년도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 비용추계심사: 이견없음
- 물가대책심의: 원안가결(2026년도 4분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류, 자재 및 냉·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삭　제>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조개껍데기류폐기물”이란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로서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폐농약 등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9. “전자신고”란 대형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키오스크)을 통해 배출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구청장은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

2.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제8조(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방식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의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거방식은 문전 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거점수거 및 그 밖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지로 반입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재래시장 등 주간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골목길에서 생활폐기물을 차량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여 수집하는 경우

마.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사전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작업을 위하여 노면 청소차량, 특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마.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거 완료된 차량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사. 운전원이 차량을 정지하고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아.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배출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조개껍데기류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삭 제>

3.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전자신고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연탄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가. 마대 등에 담아 제3호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배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 대행

②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 이상은 20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규격마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20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방법으로 배출하는 마대는 5매 이하로 배출하며, 5매 초과 배출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폐의약품은 포장재를 최대한 제거하고, 액상 폐의약품은 내용물이 배출함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2.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잔류농약(내용물을 말한다)과 농약 빈 용기를 구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3. 수은함유 폐기물(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을 말한다)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⑥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과 그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각각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기록·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
   가. 별표 7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나. 별표 7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4호서식)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적정 배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의 배출 방법으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보관시설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과 같이 다수 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품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에 따라 용량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3장 종량제봉투 등

제14조(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로 구분하며 그 각각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삭 제>
3. 음식물류전용봉투: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공공용봉투: 도로변이나 골목 등 공공장소를 청소할 경우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삭 제>

6.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조개 또는 굴 등의 껍데기 처리용으로 사용

② 모든 종량제봉투는 100리터 미만으로 제작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량제봉투의 구체적 규격과 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량·재질·용도, 주의사항, 자치구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로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7조(판매소 지정) ① 판매소는 주민이 편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철·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업소, 염색소, 연탄가게 등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소
3.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소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④ 판매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⑤ 판매소의 지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2. 종량제봉투 판매시설 구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
3. 판매소 지정서 부착
4. 훼손(파손 또는 오염된 것을 말한다)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5. 낱장 판매 거부 금지
6.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이행
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판매자는 구청장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

제19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20조(청문)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제21조(공급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기업 또는 공단
2.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승인하는 자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운반 장비 보유 및 소요인력 확보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급방법 및 그 밖의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공급대행자의 봉투 수불 현황 및 판매대금 납입 여부 등을 연 두 차례 이상 정기 지도·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2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 공급대행자는 판매소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신속하게 해당 판매소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을 징수할 때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대금은 근무 시간 안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③ 공급대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단,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제4장 수수료

제23조(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수료 없음
2. 대형폐기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가격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지불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부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4조(유원지등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 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주체는 다량의 폐기물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절한 폐기물보관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입장객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형쓰레기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1. 출입구로서 입장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그 외의 구역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2.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할 것
3. 대형쓰레기통에서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汚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대형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하게 하여 폐기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집·운반할 것

제25조(수수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은 공급대행자 또는 판매소에서 한다. 단. 공급대행자가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입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의 지급대상·시기·절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업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변경 및 휴업·폐업 신고
2.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취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

② 다만, 인접한 지자체에 위치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대한 판매소 지정·변경 및 휴업·폐업 신고는 구청장이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 4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침대세트	1인용	14,000	식탁 (의자별도)	6인용 이상	7,000
	2인용(퀸사이즈포함)	16,000		6인용 미만	6,000
	2층침대	29,000		대리석식탁	10,000
	유아용	11,000		아일랜드(나무)	7,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아일랜드(대리석)	10,000
침대틀	1인용	3,000	받침대(TV, 오디오)	모든규격	3,000
	2인용(퀸사이즈포함)	4,000	의자	모든규격	4,000
	2층침대	10,000		소형(유치원용)	2,000
	유아용	5,000	책상	h형(상판,책장,서랍포함)	12,000
침대 매트리스	1인용	8,000		양수(양서랍)	7,000
	2인용(퀸사이즈포함)	9,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유아용	3,000		컴퓨터책상	5,000
돌(흙)침대	1인용세트	11,000		사무용책상	6,000
	2인용세트	21,000		상판	3,000
라꾸라꾸침대	모든규격	10,000	책장 (책꽂이)	3단 이상	6,000
쇼파 (분리기준)	1인용	5,000		3단 미만	5,000
	2인용	6,000	장식장,진열장 (차단스)	대(가로 90cm 이상)	8,000
	3인용	10,000		중(가로 90cm 미만)	6,000
	4인용 이상(일체형)	11,000		소(가로 60cm 미만)	4,000
	카우치	10,000	문갑 (거실장)	모든규격(유리별도)	6,000
	보조쇼파(스툴)	5,000		돌·유리문갑	10,000
	유아용	3,000	서랍장	5단이상(3단양수포함)	8,000
	쇼파 테이블	3,000		5단 미만	6,000
장롱 (1쪽당)	너비 120cm 이상	11,000		책상보조서랍	5,000
	너비 90cm 초과	10,000	수납장	다용도수납장	4,000
	너비 90cm 이하	8,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프레임(틀)	5,000	욕실장	모든규격	4,000
탁자	10인용 이상	9,000	컬러박스	모든규격	2,000
	10인용 미만	5,000	캐비닛	1.5m 이상	8,000
협탁	모든규격	2,000		1.5m 미만	4,000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신발장	1.5m 이상	6,000	옥돌자석매트	모든규격	11,000
	1.5m 미만	3,000	아이스박스	대(길이 1m 이상)	5,000
	아파트 옵션 수납 신발장	10,000		중(길이 1m 미만)	3,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소(길이 50cm 미만)	2,000
	화장대거울	2,000	어항	길이 2m 이상	8,000
	업소용	10,000		길이 1m 이상	5,000
사무용칸막이 (파티션)	1m 이상	5,000		길이 1m 미만	3,000
	1m 미만	4,000	액자	대각선 1m 초과	5,000
안내카운터	가로 1.5m 이상	10,000		대각선 1m 이하	3,000
	가로 1.5m 미만	8,000		대각선 50cm 미만	2,000
씽크대 (찬장포함)	대(1m 이상)	6,000	화분	대(70cm 초과)	5,000
	소(1m 미만)	4,000		중(70cm 미만)	4,000
	상부장(플랜장, 후드)	5,000		소(40cm 미만)	3,000
쌀통	일반	3,000	항아리	대(70cm 초과)	5,000
	다용도	4,000		중(70cm 미만)	4,000
문짝	철재	5,000		소(40cm 미만)	3,000
	목재	4,000	카펫	대(길이 2.5m 이상)	12,000
	유리문	10,000		중(길이 2.5m 미만)	7,000
문틀	대(높이1.6m 이상)	5,000		소(길이 1.5m 미만)	5,000
	소(높이1.6m 미만)	3,000	밥상	대(1.2m 이상)	4,000
창문	모든규격	3,000		소(1.2m 미만)	3,000
변기	모든규격	5,000		다과상	2,000
	유아용 변기	3,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비데	3,000	돗자리	모든규격	5,000
손소독기	디스펜서류	2,000	병풍	모든규격	5,000
헬멧	모든규격	5,000	방충망	대(문)	4,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소(창문)	3,000
	강화유리	10,000	소화기	3.3kg 까지	3,000
전기매트	1인용	6,000		10kg 까지	5,000
	2인용	8,000		20kg 까지	7,000
온수매트	1인용	6,000	재봉틀	대	5,000
	2인용	8,000		소	3,000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벽시계	일반형	3,000	쟁반	모든규격	1,000
	스탠드형	5,000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	3,000
고무통	지름 50cm 이상	5,000		카시트	4,000
	지름 50cm 미만	3,000		전동차	5,000
커튼봉	모든규격	2,000	장난감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블라인드	쪽당	5,000		소형(3kg 당)	1,000
여행용가방	대(화물용)	5,000	자전거	대(일반)	5,000
	소(기내용)	3,000		중(어린이)	4,000
거울	전신거울(대)	5,000		소(유아용)	3,000
	반신거울(소)	2,000	실링팬(전등)	모든규격	5,000
타이어	1,100mm 초과	12,000	가스렌지	대(오븐포함)	4,000
	1,100mm 이하	5,000		소	2,000
	600mm 이하	3,000	물탱크 (FRP 제외)	대(2.5톤 이상)	50,000
빨래판	모든규격	2,000		소(2.5톤 미만)	30,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3,000	팔레트	모든규격	5,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석유난로	모든규격	4,000
옷걸이	스탠드형	2,000	수도 호스	10m 당	1,000
	행거	3,000	환풍기	가정용	2,000
우산	모든규격	1,000		업소용	3,000
오락기	일반	10,000	레인지후드	모든규격	2,000
게시판(칠판)	모든규격	3,000	도마	모든규격	2,000
페인트통	모든규격	1,000	스피커	대(스탠드형)	5,000
휠체어	모든규격(전동제외)	2,000		소	3,000
화환	꽃제외	3,000	욕실발판	모든규격	3,000
	꽃포함	7,000	바둑판	대(두꺼운 판)	2,000
드럼통	모든규격	5,000		소(얇은 판)	1,000
보일러	모든규격	6,000	고양이 타워	대 1.5m 이상	10,000
마네킹	석고마네킹	8,000		소 1.5m 미만	5,000
	전신용	5,000	피아노	대형(그랜드)	12,000
	반신용(머리 포함)	3,000		일반(업라이트)	11,000
장판	대(5m 이상)	5,000		전자피아노	6,000
	소(5m 미만)	4,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텐트	가정용	2,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천막	가정용	6,000	부분 안마기	모든규격	5,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매트류	폴더(알집)매트(개당)	8,000
라켓	개당	1,000		장판식 매트(개당)	6,000
스키, 보드류	부츠, 스틱류	2,000		놀이용 매트(개당)	5,000
	스키, 보드	3,000		스폰지 매트(개당)	3,000
골프류	골프가방	5,000		요가매트 1인용	3,000
	골프채 개당	1,000	실내운동기구	모든규격	10,000
악기(기타 등)	모든규격	2,000		소형운동기구	5,000
트램펄린	가정용	5,000	트리	1m 미만	3,000
개집	모든규격	5,000		1m 이상	5,000
동물케이지	대(1m 이상)	5,000	체중계	대(스탠드형)	5,000
	소(1m 미만)	3,000		소	2,000
조명기구	실링팬	5,000	수납(리빙)박스	모든규격	2,000
	샹들리에	2,000	욕조	모든규격	10,000
	LED조명	3,000		반신욕기	10,000
	형광등틀	3,000		족욕기	5,000
	스탠드	2,000		플라스틱 재질	5,000
에어간판	모든규격	10,000		유아용	2,000
킥보드	모든규격(전동제외)	3,000	급식기	애완동물용	3,000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침구류, 커튼 등)		종량제봉투 50ℓ 부피기준(무게 13kg 이하)			3,000
		종량제봉투 75ℓ 부피기준(무게 20kg 이하)			5,000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목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토사 등)		마대 1개 기준(무게 15kg 이하)			4,000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표시(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4]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2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종 류	용 량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일반용 봉 투	5 ℓ	150	10	160	흰 색
	10 ℓ	289	21	310	
	20 ℓ	570	50	620	
	50 ℓ	1,418	122	1,540	
	75 ℓ	2,121	179	2,300	
재사용 봉 투	10 ℓ	289	21	310	하늘색
	20 ℓ	570	50	620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	60 ℓ	3,640	330	3,970	흰 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 청라·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전자신고”란 대형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키오스크)을 통해 배출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배출 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10조(배출 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2. 가정사업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	<삭 제>
3.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	3. ---------- ---- 전자신고---------- ---------- ---------- ---------- ---------- ---------- 배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6. ---------- ---------- ----------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	가. 마대 등에 담아 제3호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배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활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	② ---------- ----------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 이상은 20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마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30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 --- 규격마대---------- --- 20킬로그램 ---------- ----------.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1인당 10장 미만으로 판매하며, 10장 이상 배출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방법으로 배출하는 마대는 5매 이하로 배출하며, 5매 초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음식물류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로 구분하며 그 각각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종류·규격 및 용도) ① ---------- 일반용봉투---------- ---------- 재사용봉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정사업계용봉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삭 제>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3. 음식물류전용봉투: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 다량배출사업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공사장 및 집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과 같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제15조(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량·재질·용도, 주의사항, 자치구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및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 표시----------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	③ ----------

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종량제봉투----- ---------- ---------- --.
④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종량제봉투---------- ---------- ----.
제16조(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 ---------- ---------- ---------- --. ---------- 종량제봉투 ---------- ---------- ---------- 전자신고를 -- ---------- 납부해야 하며---------- ---------- ----------.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종량제봉투의 효율적---------- ---------- 종량제봉투의 공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판매소 지정) ① (생 략)	제17조(판매소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종량제봉투-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 종량제봉투를 ---------- --------.
1.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등 판매 금지	1. ---------- 종량제봉투 ----------
2. 종량제봉투 등 판매시설 구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	2. 종량제봉투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4. 훼손(파손 또는 오염된 것을 말한다)된 종량제봉투 등 판매 금지	4. ---------- 종량제봉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의 이행	6. ---------- 종량제봉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판매자는 구청장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종량제봉투를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급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급업무의 대행) ① ---------- 종량제봉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22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신 설>	③ 공급대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단,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제23조(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제23조(부과·징수)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과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지불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부담	2. ---------- ---------- -- 가격으로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 ---------- ---------- ---------- ----------.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단서 신설>	단,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은 공급대행자 또는 판매소에서 한다. 단, 공급대행자가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침대세트	1인용	14,000	식탁 (의자별도)	6인용 이상	7,000
	2인용(헌사이즈포함)	16,000		6인용 미만	6,000
	2층침대	29,000		파리석식탁	10,000
	유아용	11,000		아일랜드(나무)	7,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아일랜드(대리석)	10,000
침대틀	1인용	3,000	평판대TV, 오디오	모든규격	3,000
	2인용(헌사이즈포함)	4,000	의자	모든규격	4,000
	2층침대	10,000		소형(유치원용)	2,000
	유아용	5,000	책상	h형(상판,책장,서랍포함)	12,000
침대 매트리스	1인용	8,000		양수(양서랍)	7,000
	2인용(헌사이즈포함)	9,000		편수(의서랍, 우서랍)	6,000
	유아용	3,000		컴퓨터책상	5,000
을(흙)침대	1인용세트	11,000		사무용책상	6,000
	2인용세트	21,000		상판	3,000
라푸라푸침대	모든규격	10,000	책장 (책꽂이)	3단 이상	6,000
소파 (문리기준)	1인용	5,000		3단 미만	5,000
	2인용	6,000	광식장,전열장 (차담소)	대(가로 90cm 이상)	8,000
	3인용	10,000		중(가로 90cm 미만)	6,000
	4인용 이상(일체형)	11,000		소(가로 60cm 미만)	4,000
	카우치	10,000	로갑 (거실장)	모든규격(유리별도)	6,000
	보조소파(스툴)	5,000		을·유리로갑	10,000
	유아용	3,000	서랍장	5단이상(3단양수포함)	8,000
	소파 테이블	3,000		5단 미만	6,000
장롱 (1목당)	너비 120cm 이상	11,000		책상로조서랍	5,000
	너비 90cm 초과	10,000	수납장	자동도수납장	4,000
	너비 90cm 이하	8,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프레임(통)	5,000	옷실장	모든규격	4,000
탁자	10인용 이상	9,000	컴퓨터쇼스	모든규격	2,000
	10인용 미만	5,000	캐비닛	1.5m 이상	8,000
협탁	모든규격	2,000		1.5m 미만	4,000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침대세트	1인용	14,000	식탁 (의자별도)	6인용 이상	7,000
	2인용(헌사이즈포함)	16,000		6인용 미만	6,000
	2층침대	29,000		파리석식탁	10,000
	유아용	11,000		아일랜드(나무)	7,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아일랜드(대리석)	10,000
침대틀	1인용	3,000	평판대TV, 오디오	모든규격	3,000
	2인용(헌사이즈포함)	4,000	의자	모든규격	4,000
	2층침대	10,000		소형(유치원용)	2,000
	유아용	5,000	책상	h형(상판,책장,서랍포함)	12,000
침대 매트리스	1인용	8,000		양수(양서랍)	7,000
	2인용(헌사이즈포함)	9,000		편수(의서랍, 우서랍)	6,000
	유아용	3,000		컴퓨터책상	5,000
을(흙)침대	1인용세트	11,000		사무용책상	6,000
	2인용세트	21,000		상판	3,000
라푸라푸침대	모든규격	10,000	책장 (책꽂이)	3단 이상	6,000
소파 (문리기준)	1인용	5,000		3단 미만	5,000
	2인용	6,000	광식장,전열장 (차담소)	대(가로 90cm 이상)	8,000
	3인용	10,000		중(가로 90cm 미만)	6,000
	4인용 이상(일체형)	11,000		소(가로 60cm 미만)	4,000
	카우치	10,000	로갑 (거실장)	모든규격(유리별도)	6,000
	보조소파(스툴)	5,000		을·유리로갑	10,000
	유아용	3,000	서랍장	5단이상(3단양수포함)	8,000
	소파 테이블	3,000		5단 미만	6,000
장롱 (1목당)	너비 120cm 이상	11,000		책상로조서랍	5,000
	너비 90cm 초과	10,000	수납장	자동도수납장	4,000
	너비 90cm 이하	8,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프레임(통)	5,000	옷실장	모든규격	4,000
탁자	10인용 이상	9,000	컴퓨터쇼스	모든규격	2,000
	10인용 미만	5,000	캐비닛	1.5m 이상	8,000
협탁	모든규격	2,000		1.5m 미만	4,000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신발장	1.5m 이상	6,000	욕물자석매트	모든규격	11,000
	1.5m 미만	3,000	아이스박스	대(길이 1m 이상)	5,000
	아파트 출산 수납 신발장	10,000		중(길이 1m 미만)	3,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소(길이 50cm 미만)	2,000
	화장대거울	2,000	어항	길이 2m 이상	8,000
	업소용	10,000		길이 1m 이상	5,000
자우움환탁이	1m 이상	5,000		길이 1m 미만	3,000
(좌탁선)	1m 미만	4,000	액자	대각선 1m 초과	5,000
항내카운터	가로 1.5m 이상	10,000		대각선 1m 이하	3,000
	가로 1.5m 미만	8,000		대각선 50cm 미만	2,000
쌧크대	대(1m 이상)	6,000	화분	대(70cm 초과)	5,000
(찬장포함)	소(1m 미만)	4,000		중(70cm 미만)	4,000
	상부장(풍렌장, 후드)	5,000		소(40cm 미만)	3,000
쌀통	일반	3,000	항아리	대(70cm 초과)	5,000
	다용도	4,000		중(70cm 미만)	4,000
문짝	철제	5,000		소(40cm 미만)	3,000
	목제	4,000	카펫	대(길이 2.5m 이상)	12,000
	유리문	10,000		중(길이 2.5m 미만)	7,000
문틀	대(높이1.5m 이상)	5,000		소(길이 1.5m 미만)	5,000
	소(높이1.5m 미만)	3,000	밥상	대(1.2m 이상)	4,000
창문	모든규격	3,000		소(1.2m 미만)	3,000
벤기	모든규격	5,000		다목상	2,000
	유아용 벤기	3,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욕조	모든규격	10,000	옷자리	모든규격	5,000
	플라스틱 재질	5,000	병풍	모든규격	5,000
	유아용	2,000	방충망	대(문)	4,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소(창문)	3,000
	강화유리	10,000	소화기	3.3kg 까지	3,000
전기매트	1인용	6,000		10kg 까지	5,000
	2인용	8,000		20kg 까지	7,000
온수매트	1인용	6,000	재봉틀	대	5,000
	2인용	8,000		소	3,000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벽시계	일반형	3,000	쟁반	모든규격	1,000
	스탠드형	5,000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	3,000
코무통	지통 50cm 이상	5,000		카시트	4,000
	지통 50cm 미만	3,000		전동차	5,000
스탠드	모든규격	2,000	장난감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플라인드	목당	5,000		소형(1kg..당)	1,000
여행용가방	대(화물용)	5,000	자전거	대(일반)	5,000
	소(기내용)	3,000		중(어린이)	4,000
거울	전신거울(대)	5,000		소(유아용)	3,000
	반신거울(소)	2,000	실형팬(전동)	모든규격	5,000
타이어	1,100mm 초과	12,000	가스벤치	대(오픈포함)	4,000
	1,100mm 이하	5,000		소	2,000
	600mm 이하	3,000	폴챙크	대(2.5톤 이상)	50,000
앨대판	모든규격	2,000	(FRP 제외)	소(2.5톤 미만)	30,000
앨대건조대	모든규격	3,000	팔레트	모든규격	5,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석유난로	모든규격	4,000
옷걸이	스탠드형	2,000	수도 호스	10m 당	1,000
	행거	3,000	환풍기	가정용	2,000
우산	모든규격	1,000		업소용	3,000
오락기	일반	10,000	레인지후드	모든규격	2,000
게시판(칠판)	모든규격	3,000	도마	모든규격	2,000
레인트롱	모든규격	1,000	스피커	대(스탠드형)	5,000
휠체어	모든규격(전동제외)	2,000		소	3,000
화판	꽃제외	3,000	옥실발판	모든규격	3,000
	꽃포함	7,000	바륵판	대(우꺼운 판)	2,000
드럼통	모든규격	5,000		소(얇은 판)	1,000
보일러	모든규격	6,000	고양이 타워	대 1.5m 이상	10,000
아네킹	전신용	5,000		소 1.5m 미만	5,000
	반신용(머리 포함)	3,000	피아노	대형(그랜드)	12,000
에어갑판	모든규격	10,000		일반(업라이트)	11,000
장판	대(5m 이상)	5,000		전자피아노	6,000
	소(5m 미만)	4,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신발장	1.5m 이상	6,000	욕물자석매트	모든규격	11,000
	1.5m 미만	3,000	아이스박스	대(길이 1m 이상)	5,000
	아파트 출산 수납 신발장	10,000		중(길이 1m 미만)	3,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소(길이 50cm 미만)	2,000
	화장대거울	2,000	어항	길이 2m 이상	8,000
	업소용	10,000		길이 1m 이상	5,000
자우움환탁이	1m 이상	5,000		길이 1m 미만	3,000
(좌탁선)	1m 미만	4,000	액자	대각선 1m 초과	5,000
항내카운터	가로 1.5m 이상	10,000		대각선 1m 이하	3,000
	가로 1.5m 미만	8,000		대각선 50cm 미만	2,000
쌧크대	대(1m 이상)	6,000	화분	대(70cm 초과)	5,000
(찬장포함)	소(1m 미만)	4,000		중(70cm 미만)	4,000
	상부장(풍렌장, 후드)	5,000		소(40cm 미만)	3,000
쌀통	일반	3,000	항아리	대(70cm 초과)	5,000
	다용도	4,000		중(70cm 미만)	4,000
문짝	철제	5,000		소(40cm 미만)	3,000
	목제	4,000	카펫	대(길이 2.5m 이상)	12,000
	유리문	10,000		중(길이 2.5m 미만)	7,000
문틀	대(높이1.5m 이상)	5,000		소(길이 1.5m 미만)	5,000
	소(높이1.5m 미만)	3,000	밥상	대(1.2m 이상)	4,000
창문	모든규격	3,000		소(1.2m 미만)	3,000
벤기	모든규격	5,000		다목상	2,000
	유아용 벤기	3,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비데	3,000	옷자리	모든규격	5,000
손소독기	디스펜서류	2,000	병풍	모든규격	5,000
헬멧	모든규격	5,000	방충망	대(문)	4,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소(창문)	3,000
	강화유리	10,000	소화기	3.3kg 까지	3,000
전기매트	1인용	6,000		10kg 까지	5,000
	2인용	8,000		20kg 까지	7,000
온수매트	1인용	6,000	재봉틀	대	5,000
	2인용	8,000		소	3,000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벽시계	일반형	3,000	쟁반	모든규격	1,000
	스탠드형	5,000	유아용품	유모차, 보행기	3,000
코무통	지통 50cm 이상	5,000		카시트	4,000
	지통 50cm 미만	3,000		전동차	5,000
커튼롱	모든규격	2,000	장난감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5,000
플라인드	목당	5,000		소형(1kg..당)	1,000
여행용가방	대(화물용)	5,000	자전거	대(일반)	5,000
	소(기내용)	3,000		중(어린이)	4,000
거울	전신거울(대)	5,000		소(유아용)	3,000
	반신거울(소)	2,000	실형팬(전동)	모든규격	5,000
타이어	1,100mm 초과	12,000	가스벤치	대(오픈포함)	4,000
	1,100mm 이하	5,000		소	2,000
	600mm 이하	3,000	폴챙크	대(2.5톤 이상)	50,000
앨대판	모든규격	2,000	(FRP 제외)	소(2.5톤 미만)	30,000
앨대건조대	모든규격	3,000	팔레트	모든규격	5,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석유난로	모든규격	4,000
옷걸이	스탠드형	2,000	수도 호스	10m 당	1,000
	행거	3,000	환풍기	가정용	2,000
우산	모든규격	1,000		업소용	3,000
오락기	일반	10,000	레인지후드	모든규격	2,000
게시판(칠판)	모든규격	3,000	도마	모든규격	2,000
레인트롱	모든규격	1,000	스피커	대(스탠드형)	5,000
휠체어	모든규격(전동제외)	2,000		소	3,000
화판	꽃제외	3,000	옥실발판	모든규격	3,000
	꽃포함	7,000	바륵판	대(우꺼운 판)	2,000
드럼통	모든규격	5,000		소(얇은 판)	1,000
보일러	모든규격	6,000	고양이 타워	대 1.5m 이상	10,000
아네킹	성교마네킹	8,000		소 1.5m 미만	5,000
	전신용	5,000	피아노	대형(그랜드)	12,000
	반신용(머리 포함)	3,000		일반(업라이트)	11,000
장판	대(5m 이상)	5,000		전자피아노	6,000
	소(5m 미만)	4,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텐트	가정용	2,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천막	가정용	6,000	부분 안마기	모든규격	5,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매트류	돌돌(알집)매트(개당)	8,000
라켓	개당	1,000		장판식 매트(개당)	6,000
스키, 보드류	부츠, 스틱류	2,000		놀이용 매트(개당)	5,000
	스키, 보드	3,000		스폰지 매트(개당)	3,000
골프류	골프가방	5,000		요가매트 1인용	3,000
	골프채 개당	1,000	실내운동기구	모든규격	10,000
악기(기타 등)	모든규격	2,000		소형운동기구	5,000
트램펄린	가정용	5,000	트리	1m 미만	3,000
개집	모든규격	5,000		1m 이상	5,000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단위: 원)

품명	규격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
텐트	가정용	2,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천막	가정용	6,000	부분 안마기	모든규격	5,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매트류	돌돌(알집)매트(개당)	8,000
라켓	개당	1,000		장판식 매트(개당)	6,000
스키, 보드류	부츠, 스틱류	2,000		놀이용 매트(개당)	5,000
	스키, 보드	3,000		스폰지 매트(개당)	3,000
골프류	골프가방	5,000		요가매트 1인용	3,000
	골프채 개당	1,000	실내운동기구	모든규격	10,000
악기(기타 등)	모든규격	2,000		소형운동기구	5,000
트램펄린	가정용	5,000	트리	1m 미만	3,000
개집	모든규격	5,000		1m 이상	5,000
동물케이지	대(1m 이상)	5,000	체중계	대(스탠드형)	5,000
	소(1m 미만)	3,000		소	2,000
조명기구	실링팬	5,000	수납(리빙)박스	모든규격	2,000
	샹들리에	2,000	목조	모든규격	10,000
	LED조명	3,000		반신욕기	10,000
	형광등류	3,000		족욕기	5,000
	스탠드	2,000		플라스틱 제품	5,000
에어간판	모든규격	10,000		유아용	2,000
킥보드	모든규격(전동제외)	3,000	급식기	대완동물용	3,000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침구류, 커튼 등)		종량제봉투 50ℓ 부피기준(무게 13kg 이하)			3,000
		종량제봉투 75ℓ 부피기준(무게 20kg 이하)			5,000
공사장 정골폐기물 (폐목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토사 등)		마대 1개 기준(무게 15kg 이하)			4,000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표시(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소표시(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4]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2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종 류	용 량	제작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일반용 봉 투	5ℓ	150	10	160	흰 색
	10ℓ	289	21	310	
	20ℓ	570	50	620	
	50ℓ	1,418	122	1,540	
	75ℓ	2,121	179	2,300	
재사용 봉 투	10ℓ	289	21	310	하늘색
	20ℓ	570	50	620	
가 정 사업계용 봉 투	30ℓ	2,950	270	3,220	황 색
	50ℓ	4,850	440	5,290	
	75ℓ	7,270	660	7,930	
종 사 장 생활폐기물 마대	30ℓ	1,410	130	1,540	황 색
	60ℓ	2,820	250	3,070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	60ℓ	3,640	330	3,970	흰 색
대형폐기물 스 티 커	1,000원권	910	90	1,000	
	5,000원권	4,550	450	5,000	

[별표 4]

판매가격 및 판매이익(제2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종 류	용 량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일반용 봉 투	5ℓ	150	10	160	흰 색
	10ℓ	289	21	310	
	20ℓ	570	50	620	
	50ℓ	1,418	122	1,540	
	75ℓ	2,121	179	2,300	
재사용 봉 투	10ℓ	289	21	310	하늘색
	20ℓ	570	50	620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마대	60ℓ	3,640	330	3,970	흰 색

상위 및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

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관련조항 : 제10조(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스티커 폐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전자신고 병행 → 전자신고)

*전자신고 : 대형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을 통해 배출 신고하는 것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자신고 대상 전산망 :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 키오스크 구입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비

○ 인터넷 등 정보취약계층 지원 콜센터 운영 : 1명

나. 추계 결과 : 94,076천원 (2027년도 소요 예산)

○ 키오스크 : 24,156천원

- 구입비 : 3,630,000원 × 6대 = 21,780,000원
- 통신비 : 33,000원/월 × 6대 × 12월 = 2,376,000원

○ 유지보수비(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 13,620천원

- 유지보수비 : 1,135,000원/월 × 12월 = 13,620,000원

○ 콜센터 운영비 : 56,300천원

- 노무비 : 35,095,688원
- 경　비 : 12,853,036원
  · 보험료 : 3,619,731원
  · 급식비 : 1,968,000원
  · 시스템사용료 등 : 7,265,305원
- 기　타(일반관리비, 이윤 등) : 8,351,488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세 출			94,076	72,296	72,296	72,296	72,296	383,260
키오크스 구입비			21,780					21,780
키오스크 통신비			2,376	2,376	2,376	2,376	2,376	11,880
유지보수비			13,620	13,620	13,620	13,620	13,620	68,100
콜센터 운영비			56,300	56,300	56,300	56,300	56,300	281,500
재원 조달			73,500	73,500	73,500	73,500	73,500	367,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 금	국비						
		시비						
자체 수입	소 계		94,076	72,296	72,296	72,296	72,296	323,260
	자체재원		94,076	72,296	72,296	72,296	72,296	323,26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작성자 : 주민생활국 자원순환과장 안민기